경제혁신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보 도 자 료

희망의 대한민국 http://www.motie.go.kr

2015년 5월 15일(금)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무역위원회 덤핑조사과 과장 방순자(044-203-5870), 박종희 사무관(5873)

무역위원회, 『중국산 H형강』에 대한 수출가격인상약속 제의를 수락하기로 결정

□ 무역위원회(위원장 : 홍순직)는 제342차 회의에서 현재 덤핑조사가 진행 중인 중국산 H형강에 대해 진시스틸 등 7개사가 제출한 "수출가격인상약속 제의"를 수락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

□ 가격인상약속제도는 덤핑물품의 수출자들이 자발적으로 수출가격을 인상함으로써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제거하기 위해 활용되는 제도로서, 가격약속제의가 수락되면 해당 수출자에 대해서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없이 조사가 중지된다.

□ 중국산 H형강의 대한국 수출물량 중 85%(2013년 기준, 68만톤 4,300억원)를 수출한 진시스틸 등 7개사가 공동으로 제출한 가격인상약속 제의는 이들 7개사의 2014년 4/4분기 대한국 평균수출가격에 비해 약 24% 높은 가격을 최저수출가격으로 하겠다는 내용으로

○ 무역위원회는 이러한 수출가격 인상으로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제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 금번 가격인상약속 건은 다수의 수출자가 관련된 덤핑조사에서 수출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인상을 제의하여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린 덤핑조사를 원만하게 해결한 최초의 사례라는데 의의가 있으며,

○ 이를 통해 H형강의 국내생산자인 현대제철㈜와 동국제강㈜는 내수 판매가격 인상 및 판매물량 증가로 매출 및 이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중국 수출자와 국내 수입자들도 덤핑방지관세 납부 대신에 판매가격 인상을 통해 이득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 H형강의 국내시장규모는 2013년 기준으로 2조 2,500억원이며, 이 중 중국산 수입은 23.1%인 5,200억원임

□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덤핑조사를 2014. 7. 31. 개시하여 2014. 12. 23. 예비판정에서 17.69 ~ 32.72%의 예비덤핑률을 결정한 바 있으며, 진시스틸 등 7개사는 예비판정 결과를 근거로 수출가격인상약속을 제의해 왔다.

□ 기획재정부장관이 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라 가격인상약속 제의를 수락하면 진시스틸 등 7개 수출자에 대해서는 덤핑조사가 중지되고 덤핑방지관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 한편, 무역위원회는 7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중국산 H형강 공급자에 대한 덤핑조사결과를 5월 말에 최종 심의·결정할 예정이다.

[별첨] 참고자료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무역위원회 덤핑조사과 방순자 과장(☎ 044-203-5870), 박종희 사무관(☎ 044-203-587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수출가격인상약속 제의 수출자 및 조사경과

1. 수출가격인상약속 제의 수출자

○ HEBEI JINXI IRON AND STEEL GROUP CO., LTD. 및 HEBEI JINXI SECTION STEEL CO., LTD.(진시스틸)

○ RIZHAO MEDIUM SECTION MILL CO., LTD.(르자오스틸)

○ SHANDONG IRON AND STEEL COMPANY LTD LAIWU COMPANY (라이우스틸)

○ MAANSHAN IRON & STEEL CO., LTD.(마안산스틸)

○ SHANXI XINTAI IRON & STEEL CO., LTD.(신타이스틸)

○ INNER MONGOLIA BAOTOU STEEL UNION CO., LTD.(바오토우스틸)

○ TANGSHAN FENGRUN TIANXING IRON AND STEEL CO., LTD.(티엔싱스틸)

2. 반덤핑 조사경과

○ '14. 5. 30. : 신청인(현대제철, 동국제강)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

○ '14. 7. 31. : 조사개시 결정공고(무역위 공고 제2014-9호)

○ '14. 12. 23. : 예비긍정판정(제337차 무역위)

○ '15. 1. 7. : 예비덤핑률 산정관련 제1차 이해관계인회의 개최

○ '15. 2. 26. : 산업피해조사관련 공청회 개최

○ '15. 2~3월 : 진시스틸 등 6개사에 대한 국외현지실사

○ '15. 3. 31. : 중국 수출자 진시스틸 등 7개사 가격약속제의서 제출

○ '15. 5. 6. : 중국 수출자 진시스틸 등 7개사 가격약속제안서 수정 제출

○ '15. 5. 8. : 국내생산자, 가격약속 제의 수락 동의서 제출

참고 2 가격약속(Price Undertaking)

1. 가격약속제도의 개요

○ 수출자가 가격인상 또는 수출을 중지하겠다는 자발적인 약속을 받아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가 제거될 수 있다고 납득할 경우 잠정조치나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없이 절차를 중지하거나 종결할 수 있는 제도

2. 가격약속제의 및 처리절차

○ 예비긍정판정 이후 최종판정 이전에 조사대응 공급자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제의 가능하며, 조사대응 공급자가 제의 시 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함

○ 기획재정부장관이 가격약속 수락여부에 관해 위원회에 의견을 요청하면 가격약속수락 건의여부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심의·결정함

3. 가격약속의 수락

○ 가격약속 수락여부는 조사당국의 재량사항으로 수락을 거부하는 경우 그 이유를 밝히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격약속을 제의한 조사대응 공급자에게 견해를 표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 가격약속이 수락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없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1]함

○ 가격약속 수락 후에도 조사대상공급자가 요청하거나 또는 기획재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는 계속되며, 부정판정이 내려지면 가격약속은 자동적으로 소멸됨

1) 조사의 중지는 조사대상공급자 중 일부에 대해 약속을 수락한 경우 그 개별 공급자에 대한 조사중지를 말하며, 조사종결은 조사대상공급자 모두 약속을 수락한 경우 조사건 자체를 종결하는 것을 말함

○ 무역위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가격 약속이행을 감시하기 위해 관련 정보 요청 및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약속불이행 시 입수 가능한 최상의 정보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음

※ 가격약속 제의서에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관세법시행규칙 제19조(가격수정·수출중지 등의 약속)

① …약속을 제의하는 경우 그 약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출자가 수출가격을 실질적 피해등이 제거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내용 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간내에 덤핑수출을 중지한다는 내용
2. (생략)
3. 형식·모양·명칭등의 변경이나 저급품의 판매등의 방법으로 약속의 이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
4. 제3국이나 제3자를 통한 판매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약속을 위반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
5. 수출국안에서의 판매물량 및 판매가격과 우리나라로의 수출물량 및 수출가격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겠다는 내용
6. 관련자료에 대한 검증을 허용하겠다는 내용
7. 그 밖의 상황변동의 경우에 기획재정부장관의 요구에 대하여 재협의할 수 있다는 내용